



익명보도의 딜레마

필자는 20대에 잠시 모 방송사의 사회부 기자로 근무했다. 사회부 기자의 주된 임무는 경찰서를 취재하여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받은 교육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건 당사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정치인, 연예인 등의 공인이 아닌 이상 일반인의 이름을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된다는 원칙은 위로는 보도국장으로부터 아래로는 수습기자까지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지엄하고도 확고한 지침이어서, 어쩌다 실수로 이를 어긴 기자는 데스크에 불려가 눈물이 쏙 빠지도록 질책을 받아야 했다.

아마 익명보도의 원칙은 지금도 대체로 많은 언론사에서 지켜지는 듯하다. 사건의 당사자가 자신의 실명이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상당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니 말이다. 대개의 뉴스나 기사에는 실명대신 사건당사자와 전혀 상관없는 이니셜을 사용하여 'C씨', '김모씨' 등으로 보도하곤 한다.

문제는 그 익명보도 때문에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 다른 업체가 유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최근 언론중재위원회 상담팀에 도움을 요청한 S씨가 바로 이 경우이다. 그녀는 지방의 조그만 소도시에서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그 지역의 다방 주인들 사이에 분쟁이 났단다. A다방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독립하여 인근에 B다방을 개업하자 앙심을 품은 A다방의 여주인이 B다방의 여주인과 그녀의 내연남 사이를 이간질 한 것. 결국 B다방 주인의 내연남은 연인의 얼굴에 염산을 뿌리는 테러를 저질렀고 이 사건이 공중파를 타고 방영되었다. 그런데 보도에서 사건의 다방을 'T다방'으로 언급한 것이 화근이었다. 문제의 다방을 지역 주민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전혀 관련 없는 이니셜을 사용하여 보도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마침 그 도시에 T다방은 딱 하나밖에 없었고 바로 그게 S씨가 운영하는 다방이었던 것. 좁은 지역사회에서 보도의 파급효과는 대단했고, 이후 그녀를 비롯한 다

방의 종업원들은 어디를 가나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너네 사장 TV에 나오더라"라는 말을 들어야했다. 원치 않은 스캔들에 휘말린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니 대체 이 노릇을 어쩌야겠냐며 상담을 부탁해왔다.

그녀의 사연을 듣고 있자니 내 지인이 경험한 유사한 사례가 떠올랐다. 십여 년 전, 서울 모 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자 판사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많은 언론사들이 해당 부장판사를 '김 모' 부장판사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사건의 당사자는 김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언론사에서 익명보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흔하디흔한 성씨인 '김'이라는 성으로 바꾸어 보도한 것.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그 지방법원에는 하필 그토록 흔한 김 씨 성을 가진 부장판사가 단 한 명뿐이었고,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김 모 부장판사는 한동안 성추행 판사라는 오명에 시달렸으며 세월이 꽤 흐른 지금도 그 사건의 후일담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해당 사건이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정정보도를 신청하고, 이와 더불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마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로서는 다소 억울할 것이다. 실명으로 보도하자니 사건의 당사자가 드러나고, 그렇다고 익명으로 보도하자니 미지의 인물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딜레마 아닌가. 하지만 조금은 가혹한 말일지 몰라도 기자가 명예훼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익명으로 보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연 그 지역에 T로 시작하는 다방이 있는지, 그 법원에 김 씨 성을 가진 부장판사가 몇 명인지 알아보고, 행여 기사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한 번 더 체크한 후에 보도해야 한다. 때로 그 절차가 번거롭고 성가시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난데없이 아무 상관없는 사건에 휘말려 소문에 시달려야 하는 당사자의 괴로움보다는 가볍지 않을까.

